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88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이수진·서미화·송옥주

김준혁 • 이원택 • 전종덕

김문수 · 김영호 · 박홍근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 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법률 제 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호 중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을 "동의의사를 표시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부의사"를 "동의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거부하려는"을 "동의하려는"으로, "거부의사"를 "동의의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거부의사를 표시한"을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거부의사"를 "동의의사"로 한다.

제68조제9호의3 중 "거부의사를 표시한"을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2(잔여검체의 제공 등)	제42조의2(잔여검체의 제공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	2
에 제공하려는 의료기관은 제	
공 대상이 되는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피채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호에 대한 사항은 구두로도 설	
명하여야 한다.	
1. 피채취자가 <u>거부의사를 표시</u>	1 <u>동의의사를 표</u>
<u>하지 않으면</u> 잔여검체가 인체	<u>시하면</u>
유래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다	
는 사실	
2. 제1호에 따른 <u>거부의사</u> 표시	2 <u>동의의사</u>
방법 및 절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3
피채취자가 잔여검체의 제공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서명 또	<u>동의하려는</u>
는 날인된 서면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u>거부의사</u> 를 표시하여야	<u>동의의사</u>

한다. <u>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u> ----. <u><후단 삭제></u> 면의 수령 거부는 전단에 따른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 다.

- ④ 의료기관은 제3항에 따라 피채취자가 <u>거부의사를 표시한</u>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⑨ (생 략)
- ① 제2항에 따른 서면고지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u>거</u> 부의사 표시 방법 및 절차, 제5 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승인 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9의2. (생 략)
 - 9의3.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u>거부의사를 표시한</u> 피채취 자의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 은행에 제공한 자
 - 10. ~ 13. (생략)

4
<u>동의의사를 표시하지</u>
아니한
⑤ ~ ⑨ (현행과 같음)
<u>\</u>
의의사
 제68조(벌칙)
세00소(실역)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u>동</u> 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u>ট</u>
10. ~ 13. (현행과 같음)